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22.

논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5.10.22 ~ 11.05 [14일간]
2. 공고방법 : 논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군구 게시판 게시(게재)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4. 당 사 자

| 입주기업체명 | 대표자 | 주 소(사업장) |
|-----------|-----|---------------------------------|
| (유)대기환경조명 | 박○제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길 45-9 [양지농공단지] |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함
- 나. 임대차계약 해지로 공장의 사용권 등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권리 소멸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7. 법적근거 또는 조문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청문 및 의견제출

- 가. 청문일시 : 2015.11.12. (목) 16:00~18:00 (2시간)
- 나. 청문장소 :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실 (논산시청 본관 1층)
- 다. 청문주재 : 은진면사무소 주민생활팀장 하헌준
- 라. 의견진술 방법 : 의견제출서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구술(신분증, 소명자료)

9. 기타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본 행정 처분(입주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 041-746-6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 (전화번호:) |
| | 의견 | |
|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